



우리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바, 법에서 정한 검사항목 외에 근로자의 과거병력(허리디스크 등)을 확인, 과거병력자의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배치를 기하고자 척추엑스레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엑스레이검사비용을 신규채용시 건강진단비(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귀하가 질의하신 신규채용시 척추엑스레이 검사 항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의 별표2의 6항목인 근로자 건강관리비의 법정검사 항목외에 속하는 항목이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성남에 있는 전자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이번에 작업환경횟수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 규칙 제93조의 2,3항에 보면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작년 말부터 회사를 이전하기 시작하여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시에 현재 1층은 이전을 완료하여 신공장에서 실시를 하였고, 2층은 이전하는 중이라서 신공장과 구공장에서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2층은 2002년도에 횟수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가요? 참고로 작업공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계설비와 대수 그리고, 작업자까지 그대로입니다.
2. 횟수 조정을 단위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회사는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다른건 50%미만인데, 한 공정에서만 발생하는 "연"의 노출수준이 50%를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한 공정만 1년에 1회를 하고, 나머지 공정은 3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요?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야하는데, 급한 일이라서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 1.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 제1항 3호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1층의 경우 상, 하반기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면, 횟수조정이 가능하나, 2층의 경우 상, 하반기 서로 다른 작업환경에서 측정이 있었다면, 횟수조정이 불가능하리라고 사료됨.
- 2.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제45조 제3항 4호에 의하면, "단위공정에서 전 화학물질이 각각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물질 중 횟수조정주기가 가장 짧은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횟수를 당해 공정의 전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횟수로 동일하게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귀사의 경우 전체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이며, A공정의 횟수조정주기는 3년, B공정의 횟수조정주기는 1년일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횟수조정주기는 1년으로 함이 타당함.

Q

1. 00 현장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원가 투입하여 시공하는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의 지분율대로 처리한다고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 각 사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동도급 협약시 약조하였으나 이런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이하로 분배되어 공동도급사의 지분율대로 분배가 가능한지? (예, A사:50%, B사:30%, C사:20%일 경우 1건 사고를 0.5 건, 0.3건, 0.2건의 분배방식)
2. 공동도급 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종전까지 지분율대로 순번에 따라서 각 사별 사고처리를 하였는데 공동명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동 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재해자수는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해자수가 1명이라도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 통상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2001. 1. 1 이후 발생 재해에 대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리고, 공동도급사의 공동명의에 의한 산재보험처리는 현재로는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Q

1. 당현장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 당초 안전관리비가 요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는바 차후 설계변경시 요율대로 감액조치하여야 합니까?
2. 만약 감액조치가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설계변경시 재료비 및 직접 노무비의 증가가 발생시에 증가되는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증액시켜도 무방한지 알고 십습니다.

A

1. 안전관리비 계상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차후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금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대상액 및 계상기준은 관련규정 참조).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최저 기준이므로 법적 계상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굳이 감액조치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나. 감액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설계변경시 대상액(재료비, 노무비 등)증가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는 경우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가 최초 계상한 안전관리비보다 증액되는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귀 현장의 경우 기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 후 대상액 증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많이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 계상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부족분 만큼만 계상하면 될 것임.